

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6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가족단위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탄소제로교육관의 휴관일을 평일로 변경하고
- 나. 상위법령에 미규정된 이용자 권리 제한 조항과 중복 규정된 손해 배상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의 체계성 및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탄소제로교육관의 휴관일 변경(안 제6조)
당초 : 일요일 → 변경 : 월요일
- 나. 관람의 제한 규정 삭제(안 제7조)
- 다. 행위의 제한 규정 삭제(안 제8조)
- 라. 변상책임 규정 삭제(안 제9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민법」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중 “일요일”을 “월요일”로, “설”을 “설날”로 한다.

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휴관) ① 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매주 <u>일요일</u> , 1월 1일, <u>설</u> 및 추석 연휴기간 2. 3. (생략) ② (생략)	제6조(휴관) ① ----- -----. 1. ---- <u>월요일</u> ----- <u>설날</u> - ----- 2.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관람의 제한) <u>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.</u> 1.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3. 인화물질 및 위험물,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.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	<삭 제>
제8조(행위의 제한) ① <u>관람자는 교육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	<삭 제>

1.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

2.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하는 행위

3.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

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,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제9조(변상책임)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관 내 전시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관 계 법 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4. 생략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
가. 생략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
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다. ~ 마.

6. 생략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「민법」

제750조(불법행위의 내용)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□ 「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」

제2조(공휴일)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.

1. ~ 3. 생략
4. 설날 전날, 설날, 설날 다음날 (음력 12월 말일, 1월 1일, 2일)
5. ~ 11. 생략

소관 실 · 과		환경안전과
입 안 자	과 장	문 경 원
	담 당	이 재 익
	담 당 자	전 유 향 (480-5287)